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

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귀하(귀 법인)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귀하(귀 법인)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. . . 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통 지 번 호		통 지 일 자		
체납자	성명(대표자)	주민(법인, 외국인) 등 록 번 호		
	상호(법인명)	사 업 자 등록번호		
	주소(사업장)			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내용(총 체납내용: 원)				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종류 (항목)	납부기한	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	
		계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가산금
명단공개 내용 및 소명기한				
명 단 공 개 예 정 일				
명 단 공 개 방 법				
소 명 기 한				

※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(직위/직급) 서명		검토자 (직위/직급)서명		결재권자 (직위/직급)서명	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	접수	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		
우	도로명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번호()	팩스번호()	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		/ 공개구분	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					